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송명화 의원 외 9명
- 나. 의안번호: 제1041호
- 다. 발의일자: 2019. 10. 4.
- 라. 회부일자: 2019. 10. 22.

2. 제 안 사 유

-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책임성 강화(안 제8조제3항).

- 나.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'관련 법령 등'으로 수정(안 제15조제1항).
- 다.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시 지원대상, 사업자의 보고서 제출방법, 시의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환경변화 등에 따른 탄력적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 삭제
(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4호, 제16조제3항, 제17조제1항 및 제2항, 제18조).
- 라.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3조).
- 마.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4조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련 법령: 「대기환경보전법」
- 나. 예산 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며,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「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」는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·복지증진 및 서울시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.
- 안 제2조제5호와 제23조는 「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¹⁾」에 따라 ‘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’와 ‘에코마일리지 제도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등 ‘에너지절약 마일리지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, 시행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8조제3항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,

1)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'19년 10월 4일 발의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, 이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.

- 안 제15조제1항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환경부의 「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」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‘규칙’을 ‘관련 법령 등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,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- 안 제16조제1항, 제2항제4호 및 제3항, 제17조제1항 및 제2항, 제18조는 현행 조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, 사업자의 보고서 제출 방법, 시의 중단 사유 등을 ‘규칙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주변 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‘시장’이 정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,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